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허5047 등록무효(특)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기웅

피 고 1.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상구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6. 22. 2019당211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6. 28. 피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9당2116호로 '아래 나. 항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청구항 1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비교대상 발명 1, 2)¹⁾ 또는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20. 6. 2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은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뜯음시작부를 구비한 운송장

1) 비교대상발명 1은 1995. 10. 17.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7-266746호에 기재된 '운송장'이라는 명칭의 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2005. 10. 6.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397725호에 기재된 '광고 기능을 가진 운송장'이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2) 출원일/ 등록일/ 말소등록일²⁾/ 등록번호: 2015. 5. 20./ 2016. 2. 25./ 2021. 2. 25./ 제10-1599207호

3) 특허권자: 피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 전면에 배송정보가 표시된 운송내용표시부; 상기 운송내용표시부 배면에 구비되고 타면으로 접착제가 도포된 운송장접착부; 및 상기 운송장접착부 배면에 구비된 이형지를 포함하고, 상기 운송내용표시부는 일측 소정 범위에 해당하는 배달표지부가 구비되어, 운송내용표시부의 타측과 분리되는 운송장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배달표지부 일측과 연결된 뜯음시작부를 포함하며, 상기 뜯음시작부는 운송장접착부 및 이형지와 분리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뜯음시작부는, 뜯음시작부 및 배달표지부가 이어지는 뜯음연결부; 상기 뜯음연결부 아래로, 뜯음시작부에 대해 운송장접착부 및 이형지가 분리된 틈인 완전절단뜯음분리부; 및 상기 뜯음연결부에 의해 배달표지부와 연결된 소정 너비를 이루는 뜯음시작두께형성부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뜯음시작두께형성부는, 전면으로 위치되어 배달표지부와 연결된 배달연결뜯음시작부; 상기 배달연결뜯음시작부 배면에 위치되고 운송장접착부와 분리된 접착분리뜯음시작부; 및 상기 접착분리뜯음시작부 배면에 위치되고 이형지와 분리된 이형분리뜯음시작부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뜯음시작부는 운송장접착부 및 이형지와 나누어지되, 운송내용표시부, 운송장접착부 및 이형지가 접착되어 운송장을 구비한 상태에서, 운송장 배면에서 소정 깊이로 커팅된 배면커팅방법에 의하여 운송장접착부 및 이형지와 분리되고 운송내용표시부와 연결되

2) 이 사건 특허권은 2021. 2. 25. 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등록되었다.

는 뜯음시작부가 구비되며(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운송장접합부³⁾는, 전면의 배달표지부가 제거되는 부분으로 광고, 안내, 및 경품안내 중 어느 하나의 정보가 표기된 광고경품안내부; 및 상기 광고경품안내부의 일측에 위치되어 상기 배면커팅방법에 의하여 분리되는 접착분리뜯음시작부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이형지는, 상기 배면커팅방법에 의해 분리되는 이형분리뜯음시작부를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뜯음시작부를 구비한 운송장(이하 '이 사건 제 1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12】 각 삭제.

4)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운송장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택배를 배송하고 난 후 회수하는 배달표를 손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운송장 일측 가장자리에 뜯음시작부를 구성하여 손쉽게 운송장 및 운송물로부터 배달표를 분리할 수 있어 시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운송장 다른 부분도 훼손시키지 않는 뜯음시작부를 구비한 운송장에 관한 것이다.

㉡ 배경기술

[0005] 배송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운송장 일측에 있는 배달표를 배송자가 회수해야한다.

[0006] 근래에는 이러한 배달표를 제거한 후 드러난 운송장에는 광고나 경품 소개 내용이 표기되기도 한다.

[0007] 종래의 운송장에서는 배달표를 비롯한 다층의 레이어에 대해 단순 구역만 형성하기 때문에, 배달표 부분을 날카로운 칼이나 송곳이 있어야만 떼어내기가 용이하게 된다.

[0008] 하지만 이를 위해 별도의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다닐 수 없어 그대로 손톱 등을 이용하여 배달표를 떼어내게 된다. 하지만 다른 부분과 같은 높이를 이루어 쉽게 떼어내지 못하게 된다. 특히 많은 운송물을 배송하는 중이어서 바쁜 와중에 어느 부분이 배달표

3) '운송장접착부'의 오기로 보인다.

경계인지 제대로 살피기가 곤란하게 된다.

[0009] 그리하여 배달표를 뜯어 회수하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 지체하는 단점이 있다.

[0010] 또한 배달표 경계를 찾기 어려워 배달표를 이리저리 뜯어내려 하다가 배달표 일부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운송장이나 운송물 등의 외부를 훼손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㉔ 해결하려는 과제

[0013]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본 발명은 택배 등으로 배송되는 운송물에 부착한 상태에서, 배송완료된 이후 운송장으로부터 손쉽게 배달표지부를 떼어내도록 하여 손쉽게 배달표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0014] 그리고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특히 배달표지부 일측 가장자리에 뜯기 쉽도록 마련된 뜯음시작부를 구비함으로써, 사용자는 뜯음시작부를 쉽게 잡고 뜯어냄으로써 배달표지부를 손쉽게 운송장 및 운송물로부터 떼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0015] 그리고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러한 뜯음시작부가 배면커팅방법에 의하여 전면의 배달표지부와는 연결되고 배면에 위치되게 되는 운송장접착부 및 이형지와는 분리되게 커팅하여 쉽게 제조 및 분리가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0016] 그리고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러한 뜯음시작부는 전면이 배달표지부와 연결되고 배면으로 운송장접착부 및 이형지 일부가 부착된 상태로, 소정 두께와 너비를 이루어 떼어낼 때 손으로 잡기 쉽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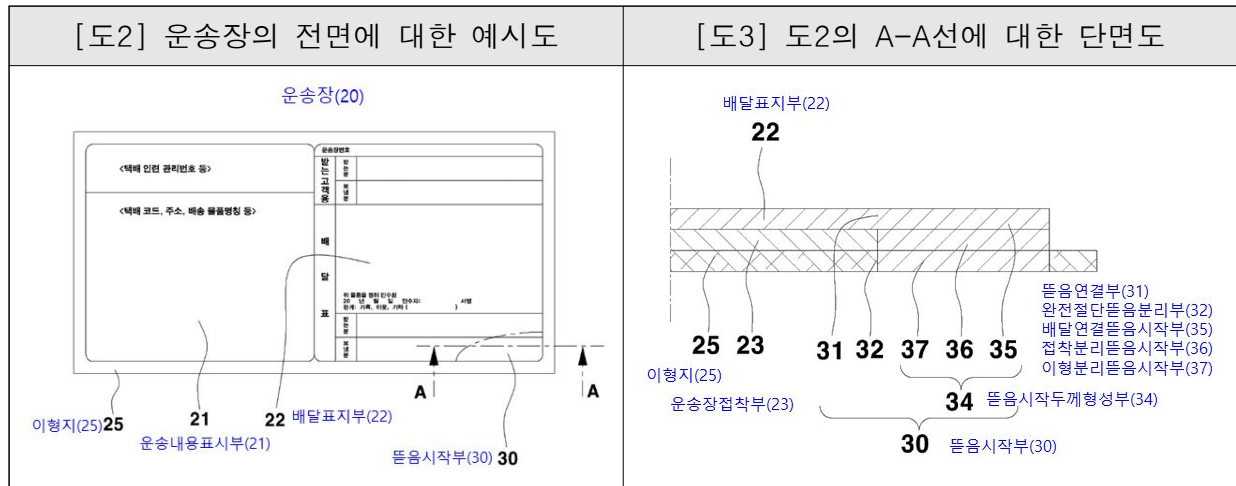
[0017] 그리고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운송장에 대해서 배면커팅방법 및 이를 위한 제조장치에 의해 손쉽게 뜯음시작부를 형성하는 것이다.

㉕ 과제의 해결 수단

[0018]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전면에 배송정보가 표시된 운송내용표시부; 상기 운송내용표시부 배면에 구비되고 타면으로 접착체가 도포된 운송장접착부; 및 상기 운송장접착부 배면에 구비된 이형지를 포함한 운송장에 있어서, 상기 운송내용표시부는 일측 소정 범위에 해당하는 배달표지부가 구비되어, 운송내용표시부의 타측과 분리되고, 상기 배달표지부 일측과 연결된 뜯음시작부를 포함하며, 상기 뜯음시작부는 운송장접착부 및 이형지와 분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뜯음시작부를 구비한 운송장을 제공한다.

[0019]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뜯음시작부는 운송장접착부 및 이형지와 나누어지되, 운송내용표시부, 운송장접착부 및 이형지가 접착되어 운송장을 구비한 상태에서, 운송장 배면에서 소정 깊이로 커팅된 배면커팅방법에 의하여 운송장접착부 및 이형

지와 분리되고 운송내용표시부와 연결되는 뜯음시작부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뜯음시작부를 구비한 운송장을 제공한다.



[0020]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운송장접합부는, 전면의 배달표지부가 제거되는 부분으로 광고, 안내, 및 경품안내 중 어느 하나의 정보가 표기된 광고경품안내부; 및 상기 광고경품안내부의 일측에 위치되어 상기 배면커팅방법에 의하여 분리되는 접착분리뜯음시작부를 포함하며, 상기 이형지는, 상기 배면커팅방법에 의해 분리되는 이형분리뜯음시작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뜯음시작부를 구비한 운송장을 제공한다.

[0021]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뜯음시작부는, 뜯음시작부 및 배달표지부가 이어지는 뜯음연결부; 상기 뜯음연결부 아래로, 뜯음시작부에 대해 운송장접착부 및 이형지가 분리된 틈인 완전절단 뜯음분리부; 및 상기 뜯음연결부에 의해 배달표지부와 연결된 소정 너비를 이루는 뜯음시작두께형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뜯음시작부를 구비한 운송장을 제공한다.

[0022]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뜯음시작두께형성부는, 전면으로 위치되어 배달표지부와 연결된 배달연결뜯음시작부; 상기 배달연결뜯음시작부 배면에 위치되고 운송장접착부와 분리된 접착분리뜯음시작부; 및 상기 접착분리뜯음시작부 배면에 위치되고 이형지와 분리된 이형분리뜯음시작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뜯음시작부를 구비한 운송장을 제공한다.

[0029]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뜯음시작부는 전면의 운송내용표시부 일측의 배달표시부와 연결되고, 운송내용표시부 배면의 운송장접착부 및 제거된 이형지와 분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뜯음시작부를 구비한 운송장을 제공한다.

㉔ 발명의 효과

[0030]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은 택배 등으로 배송되는 운송물에 부착한 상태에서, 배송완료 된 이후 운송장으로부터 손쉽게 배달표지부를 떼어내도록 하여 손쉽게 배달표를 회수할 수 있게 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0031] 그리고 본 발명의 다른 효과는, 특히 배달표지부 일측 가장자리에 뜯기 쉽도록 마련된 뜯음시작부를 구비함으로써, 사용자는 뜯음시작부를 쉽게 잡고 뜯어냄으로써 배달표지부를 손쉽게 운송장 및 운송물로부터 떼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0032] 그리고 본 발명의 다른 효과는, 이러한 뜯음시작부가 배면커팅방법에 의하여 전면의 배달표지부와는 연결되고 배면에 위치되게 되는 운송장접착부 및 이형지와는 분리되게 커팅하여 쉽게 제조 및 분리가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0033] 그리고 본 발명의 다른 효과는, 이러한 뜯음시작부는 전면이 배달표지부와 연결되고 배면으로 운송장접착부 및 이형지 일부가 부착된 상태로, 소정 두께와 너비를 이루어 떼어낼 때 손으로 잡기 쉽게 하는 것이다.

다. 선행발명들⁴⁾

1) 선행발명 5

2000. 2. 18.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0-47586호에 기재된 '기재의 일부가 박리 가능한 점착 라벨'이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아래와 같다.

㉕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0001] 본 발명은 대상이 되는 물품에 붙인 후 라벨의 일부를 벗겨 다른 용도에 이용하는데 적합한 점착 라벨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점착 라벨은 집하업자, 운송업자 또는 배달업자가 화물에 붙여 사용하는데 특히 적합하다.

㉖ 종래의 기술

[0002] 상품이 많은 경로를 거쳐 유통되거나 수송되는 수송 관계 또는 소재가 많은 공

4) 원고는 이 사건 심결에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는 제출하지 않았고,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선행발명 5, 6을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제출하였다.

정을 거쳐 가공되는 공업 관계에서는 유통의 각 포인트나 가공의 각 공정에서 그 상품에 특유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유통의 각 포인트나 가공의 각 공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정보를 추가로 입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서식의 라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유통의 각 포인트나 가공의 각 공정에서는 그 단계에서의 정보를 기록해 둘 필요가 있고, 내용을 기재한 라벨의 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0004]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발명자는 앞서 전표가 외관상 1장의 시트로 이루어진 1장물(또는 1파트)의 배송용 전표를 개발하였고, 다만 1장의 시트를 2개 부분, 즉 배달처의 주소·이름 등을 인쇄하고 물품에 붙이는 부분과 배달처에서 수취 도장을 날인받기 위한 ‘수취확인증’⁵⁾ 부분으로 분리 가능하게 작성해두어, 물품에 붙여 배달하고 배달처에서 날인한 수취확인증 부분을 분리해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실현한 것이다(특개평 9-327985호). 이 배송 전표는 종래의 결점을 모두 해소하는 것이지만, 단, 수취확인증을 분리할 때 적층하고 있는 전표의 박리 부재의 부분에서의 분리가 반드시 원활하게 실행되지 않았다. 박리 부재가 개재하고 있다고 해도 각 층은 보통의 방법으로는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 접착하고 있어, 분리할 때 계기가 없기 때문이다.

㉔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

[0005] 본 발명에서는 상기와 같이 물품에 붙이는 부분과 배달처에서 수취 도장을 날인해 받기 위한 ‘수취확인증’의 부분이 분리 가능하게 작성된 전표에서 분리하여 이용하여야 할 부분을 원활히 박리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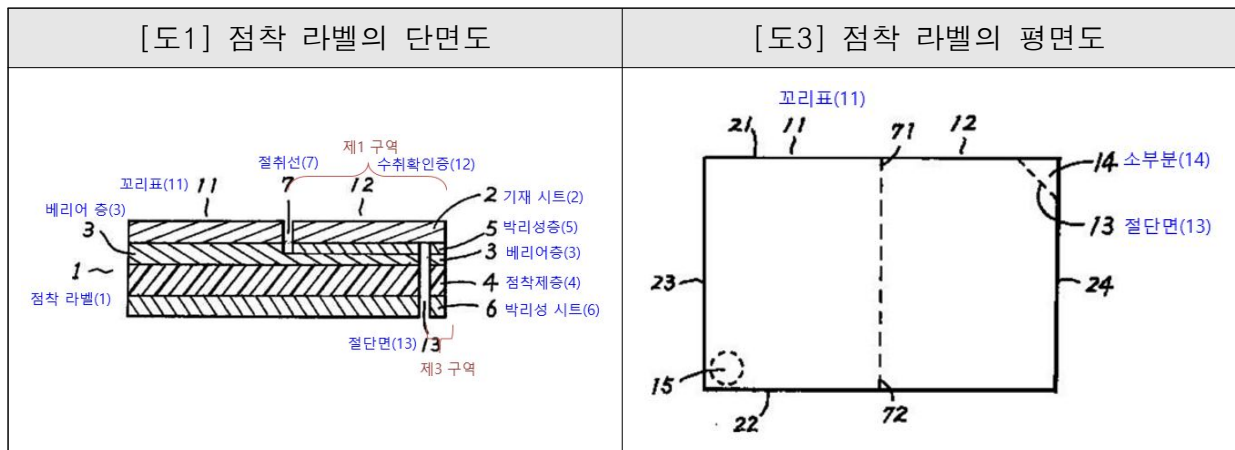
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0006] 본 발명에서는 물품에 부착할 때 라벨의 박리성 시트 일부를 남긴 채로 부착하고, 그 부분의 부착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박리성 시트와 함께 집어서 박리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청구항 1의 발명에서는 겹으로부터, 기재시트, 베리어층, 점착제층 및 박리성시트가 이 차례대로 적층된 라벨에 있어서, 상기 기재 시트는 제1 구역과 제2 구역으로 절취선을 따라 분리 가능하게 되어 있고, 상기 제1 구역 아래에서의 기재 시트와 베리어층 사이에는 박리성층이 적층되어 있으며, 상기 제1 구역의 라벨 단부 근방의 소부분에서는 뒤편의 박리성 시트로부터 박리층에 도달하는 절단면과 라벨 단부에 의해 둘러싸이는 제3 구역이 구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㉖ 발명의 실시 형태

[0010] 본 발명의 점착 라벨 1의 모식적 단면도를 도1에, 평면도를 도3에 나타낸다. 도1에서 좌측 부분은 물품에 대한 배달처의 주소·이름 등의 정보를 인쇄하여 사용되는 꼬리

표(11)로서의 기능을 가지도록 의도된 부착표이다. 이 때문에 꼬리표(11) 부분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각 층이 견고하게 적층되어 있고, 사용시 박리하는 것 외에는 층 사이가 박리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꼬리표(11)의 부분의 기재시트(2)의 겉에는 의뢰일, 발송처의 주소·이름, 발송지의 주소·이름, 내용물 등의 정보를 인쇄 또는 손으로 쓰기 위한 기입란이나 항목 등이 미리 인쇄되고 있어 보통, 라벨마다 바코드(bar code)나 일련번호(consecutive number)를 인쇄해 1개의 안건 마다의 고유번호를 붙여 두고 바코드 리더에 따라 판독하고, 자세한 정보를 조회하거나 취급한 일을 기록할 수도 있다.



[0011] 도1에서 우측 부분은 배달처에 도착될 때에 미리 또는 수취의 확인을 위한 날인을 받은 후에 박리하는데, 어느 경우든 간에 수취 도장이 날인된 상태로 배달업자가 영업소에 가지고 돌아가는 부분이고, 수취확인증(12)의 기능을 가지는 박리 부분이다. 이 때문에 수취확인증(12) 부분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박리성층(5)과 배리어층(3) 사이에서 박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수취확인증(12) 부분의 기재시트(2)의 겉에는 수취 도장을 날인하는 날인란이나 날인 하는 사람이 확인하기 쉽게, 꼬리표와 같은 정보도 병기해두면 좋다.

[0012] 기재시트(2)에는 절취선(7)이 설치되어 있다. 절취선(7)은 기재시트(2)를 상하 방향으로 횡단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취선(7)의 깊이는 적어도 기재시트(2)를 가로질러 박리층(5)에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13] 배리어층(3)은 기재시트(2)의 뒷면에 점착제층(4)을 설치하는 것에 앞서 기재시트(2) 뒷면의 표면을 조정하는 의미에서 설치하는 동시에 수취확인증(12) 부분에서는 기재시트(2)와 배리어층(3) 사이에 설치된 박리성층과의 박리성, 다시 말해 필요한 정도의 약한 점착력을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또 배리어층(3)은 수취확인증(12) 부분을 박리한 후에 점착제층(4)이 노출되어 끈적거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0014] 박리성층(5)은 수취확인증(12) 부분의 기재시트(2)와 베리어층(3) 사이에 삽입되어 설치된다. 이 박리성층(5)은 기재시트(2)에 대하여는 비교적 견고하게 접착하고, 베리어층(3)과는 약한 접착력을 가지도록 선택한 재료로 구성한다.

[0015] 점착제층(4)은 점착 라벨(1)을 물품에 붙이기 위한 것으로 베리어층(3)에 적층되어 있는 것이다.

[0016] 박리성시트(6)는 점착제층(4)에 점착되어 있어 점착 라벨(1)을 물품에 부착할 때까지 점착제층(4)을 보호하고 동시에 점착제층(4)이 부주의하게 다른 물품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0017] 본 발명의 점착 라벨(1)의 수취확인증(12) 부분에는 우변(24)과 평행하게 뒷면의 박리성시트(6)로부터 적어도 박리성층(5)에 도달하는 절단면(13)이 설치되고, 절단면(13)과 점착 라벨(1)의 단부인 윗변(21), 아랫변(22) 및 우변(24)에 의해 단부 근방의 소부분(14)이 구획되어 있다. 이 소부분(14)은 점착 라벨(1)을 물품에 붙인 후 수취확인증(12) 부분을 벗겨내는 계기가 되는 손잡이편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0019] 본 발명의 점착 라벨(1)은 사전에 소정의 란에 기입하거나 프린트한 후 필요에 따라 기입 또는 프린트된 정보를 관리용 컴퓨터에 입력한 후 소부분(14)이 되는 부분을 남기고, 박리성시트를 떼어내서 물품에 부착하는 것에 의해 운송 도중에 상품의 식별을 하고, 상품마다 미리 정해진 조치, 예를 들어 배송 루트의 선택 등을 행하여 최종적으로는 배달처(발송처)에서 수취인의 날인을 받을 때 날인 전후에 꼬리표와 수취확인증 부분을 분리하여 수취확인증을 가지고 돌아사 수취의 증명으로 보관하거나 발송처에 수취한 취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때 수취확인증 하층에 있는 박리성시트의 일부인 점착 라벨 단부 근방의 소부분을 수취확인증을 분리할 때의 소부분(14)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 발명의 효과

[0020] 청구항 1의 발명에 의하면 분리 가능(separable)한 수취확인증(12)의 단부에 뒤편의 박리성시트(6)로부터 박리성층(5)에 도달하는 절단면에 따라 라벨 단부 근방에 라벨을 물품에 붙였을 때에 붙여지지 않은 소부분(14)이 생기고, 소부분(14)을 잡아당김으로써, 수취확인증(12) 부분의 분리가 용이하게 된다. 게다가 이 소부분(14)은 박리성시트(6)의 일부를 절단면에 따라 구획하는 것으로서 형성할 수 있으므로 별개의 소재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

2) 선행발명 66)

5) 원고가 제출한 번역문에는 '판취'로 기재되어 있으나, 운송업자가 배송 후 수령인으로부터 수취 확인을 받고 가지고 가는 부분으로 '수취확인증'으로 기재한다.

2004. 12. 23.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370636호에 게재된 '광고를 수록한 택배용 운송장'이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내용 및 도면은 아래와 같다.

㉠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광고를 수록한 택배용 운송장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택배용 운송장에 광고를 수록함으로써 운송장의 운송기록을 확인하는 택배 이용자에게 자연스럽게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여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구성한 광고를 수록한 택배용 운송장에 관한 것이다.

운송인은 물품을 목적지까지 배달하고 수령인으로부터 운송인용 운송지(12)에 인수 확인을 받은 후, 운송인용 운송지(12)를 부착용지(11)에서 분리하여 보관하며, 수령인은 수령인용 운송지(13)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을 운송인으로부터 전달받게 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종래의 운송장(10, 20)은 단지 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송정보만을 기록하도록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일반적으로 물품을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함에 있어서, 송부인, 수령인 그리고 운송인은 운송장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즉, 송부인은 운송장에 기록된 정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게 되고, 운송인은 물품 전달장소를 찾기 위해 운송장을 확인하며, 수령인은 받은 물품을 누가 송부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운송장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된다.

본 고안은 이와 같이 면밀히 검토되는 운송장에 광고기능을 추가하여, 운송장의 기록 내용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운송장에 인쇄된 광고를 함께 살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광고효과를 극대화한 택배용 운송장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상기 운송인용 운송지를 상기 부착용지의 평면에서 분리하면 광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상기 광고가 상기 부착용지 평면 중 상기 운송인용 운송지가 부착되는 위치에 수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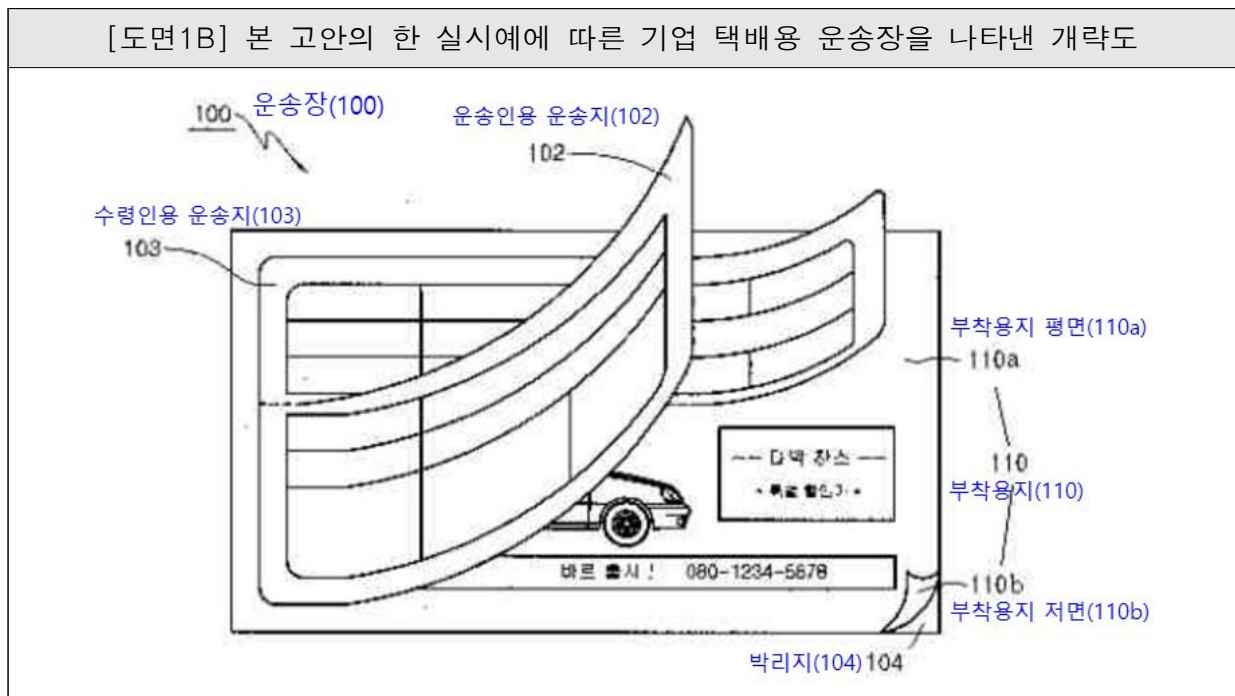
도면에서, 도 2b는 각각 본 고안의 한 실시예에 따른 기업 택배용 운송장을 나타낸 개략도이다.

6) 선행발명 6은 고안에 해당하나 편의상 '발명'으로 표기한다.

도 1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기업 택배용 운송장(100)은, 저면에 박리지(104)가 부착된 부착용지(110)와, 부착용지의 평면(110a)에 나란히 부착되는 수령인용 운송지(103)와 운송인용 운송지(102)를 포함하며, 상기 운송인용 운송지(102)를 부착용지의 평면(110a)으로부터 분리하면 광고가 노출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물품에 운송장(100)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부착용지의 저면(110b)에 부착된 박리지(104)를 제거하고, 운송장(100)을 물품에 부착시킨다. 운송장(100)이 부착된 물품은 운송인에 의해 수령인에게 배달되고, 운송인은 수령인으로부터 운송인용 운송지(102)에 인수 확인을 받은 후 운송인용 운송지(102)를 부착용지의 평면(110a)에서 분리하여 보관한다. 이와 같이 운송인이 운송인용 운송지(102)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부착용지의 평면(110a)에 인쇄되어 있는 광고가 노출된다.

[도면1B] 본 고안의 한 실시예에 따른 기업 택배용 운송장을 나타낸 개략도



한편, 상기의 예에서는 운송인용 운송지(102)가 부착되는 부착용지의 평면(110a) 일측에 광고가 수록되는 것을 설명하였으나, 광고의 위치가 이에 한정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예컨대, 수령인용 운송지(103)의 평면(103a) 및/또는 수령인용 운송지(103)가 부착되는 부착용지의 평면(110a)에도 광고가 인쇄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권을 포기한 후 원고에게 과거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으로 인하여 장래에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과거의 침해행위와 관련하여서도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어 이 사건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이 사건 특허등록이 무효가 된다고 하여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으므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없다.

나. 판단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86조 제2항은 '심결에 대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허법 제133조 제4항 본문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20조는 '특허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법 제133조 제2항은 '특허의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특허심판절차에서 불리한 심결을 받은 당사자는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특허권의 포기는 소급효가 없어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특허권이 소급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

니므로, 이해관계인으로서 특허심판절차에서 불리한 심결을 받은 당사자는 그 심결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 심결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9. 1. 11.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9당142호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9. 12. 31.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위 심결은 2020. 2. 4.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계속 중인 2019. 6. 2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1. 2. 25. 이 사건 특허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하는 주체에 대하여 과거의 침해행위와 관련한 일체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약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서류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결 이전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이를 인용하는 심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특허권의 존재로 인한 법적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특허심판절차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이 존재하며, 특허권의

포기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 이후 피고들이 특허권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실질적인 불이익이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특허권을 포기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이 소멸되기 전 침해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원고의 법적 불이익이 완전히 제거된다거나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이므로, 먼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인정 여부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5의 구성요소 대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5의 각 구성요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성요소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선행발명 5
1	전면에 배송정보가 표시된 운송내용표시부; 상기 운송내용표시부 배면에 구비되고 타면으로 접착제가 도포된 운송장접착부; 및 상기 운송장접착부 배면에 구비된 이형지를 포함하고, 상기 운송내용표시부는 일측 소정 범위에 해당	꼬리표(11) 부분의 기재시트(2) 앞측에는 의뢰일, 발송처의 주소·성명, 발송지의 주소·성명, 내용물 등의 정보를 쓰기 위한 기입란이 미리 인쇄되어 있다(문단번호 [0010]). 베리어층(3)은 기재시트(2)의 뒷면에 점

	하는 배달표지부가 구비되어, 운송내용 표시부의 타측과 분리되는 운송장에 있어서,	<p>착제층(4)을 설치하는 것에 앞서 기재시트(2) 뒷면의 표면을 조정하는 의미에서 설치된다(문단번호 [0013]).</p> <p>점착제층(4)은 점착 라벨(1)을 물품에 붙이기 위한 것으로 베리어층(3)에 적층되어 있는 것이다(문단번호 [0015]).</p> <p>박리성시트(6)는 점착제층(4)에 적층되어 있다(문단번호 [0016]).</p> <p>점착 라벨(1)의 우측 부분은 수취 확인을 한 날인을 받은 후 배달업자가 영업소로 가져가는 부분으로 수취확인증(12)이다(문단번호 [0011]).</p>
2	상기 배달표지부 일측과 연결된 뜯음시작부를 포함하며, 상기 뜯음시작부는 운송장접착부 및 이형지와 분리되고,	점착 라벨(1)의 수취확인증(12) 부분에는 우변(24)과 평행하게 뒷면의 박리성시트(6)로부터 적어도 박리성층(5)에 도달하는 절단면(13)이 설치되고, 절단면(13)과 점착 라벨(1)의 단부인 윗변(21), 아랫변(22) 및 우변(24)에 의해 단부 근방의 소부분(14)이 구획되어 있다. 이 소부분(14)은 점착 라벨(1)을 물품에 붙인 후 수취확인증(12) 부분을 벗겨내는 계기가 되는 손잡이편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문단번호 [0017]).
3	상기 뜯음시작부는, 뜯음시작부 및 배달표지부가 이어지는 뜯음연결부; 상기 뜯음연결부 아래로, 뜯음시작부에 대해 운송장접착부 및 이형지가 분리된 틈인 완전절단뜯음분리부; 및 상기 뜯음연결부에 의해 배달표지부와 연결된 소정 너비를 이루는 뜯음시작두께형성부를 포함하며,	
4	상기 뜯음시작두께형성부는, 전면으로 위치되어 배달표지부와 연결된 배달연결뜯음시작부; 상기 배달연결뜯음시작부 배면에 위치되고 운송장접착부와 분리된 접착분리뜯음시작부; 및 상기 접	겉으로부터, 기재시트(2), 베리어층(3), 점착제층(4) 및 박리성시트(6)가 이 차례대로 적층된 점착 라벨(1)에 있어서, (중략) 상기 제1 구역의 점착 라벨(1) 단부 근방의 소부분(14)에서는 뒤편의

	<p>착분리뜯음시작부 배면에 위치되고 이형지와 분리된 이형분리뜯음시작부를 포함하고,</p>	<p>박리성시트(6)로부터 박리성층(5)에 도달하는 절단면과 점착 라벨(1) 단부에 의해 둘러싸이는 제3 구역이 구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문단번호 [0006]).</p>
5	<p>상기 뜯음시작부는 운송장접착부 및 이형지와 나누어지되, 운송내용표시부, 운송장접착부 및 이형지가 접착되어 운송장을 구비한 상태에서, 운송장 배면에서 소정 깊이로 커팅된 배면커팅방법에 의하여 운송장접착부 및 이형지와 분리되고 운송내용표시부와 연결되는 뜯음시작부가 구비되며,</p>	<p>점착 라벨(1)의 수취확인증(12) 부분에는 우변(24)과 평행하게 뒷면의 박리성시트(6)로부터 적어도 박리성층(5)에 도달하는 절단면(13)이 설치되고(문단번호 [0017]),</p>
6	<p>상기 운송장접착부는, 전면의 배달표시부가 제거되는 부분으로 광고, 안내 및 경품안내 중 어느 하나의 정보가 표기된 광고경품안내부; 및 상기 광고경품안내부의 일측에 위치되어 상기 배면커팅방법에 의하여 분리되는 접착분리뜯음시작부를 포함하며,</p>	<p>수취확인증(12) 부분에서는 박리성층(5)과 베리어층(3) 사이에서 박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문단번호 [0011]).</p>
7	<p>상기 이형지는, 상기 배면커팅방법에 의해 분리되는 이형분리뜯음시작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뜯음시작부를 구비한 운송장.</p>	<p>상기 제1 구역의 라벨 단부 근방의 소부분에서는 뒤편의 박리성 시트로부터 박리층에 도달하는 절단면과 라벨 단부에 의해 둘러싸이는 제3 구역이 구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문단번호 [0006]).</p>

2) 공통점 및 차이점의 분석

가) 구성요소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5의 구성요소는 '전면에 배송정보가 표시된 운송내용표시부[꼬리표(11)]⁷⁾', '운송내용표시부 배면에 구비되고 타면으로 접착제가 도포[접착제층(4)]된 운송장접착부[베리어층(3)]', '운송장접착부 배면에 구비된 이형지[박리성시트(6)]', '운송내용표시부는 일측 소정 범위에 해당하는 배달표지부[수취확인증(12)]가 구비되어, 운송내용표시부의 타측과 분리되는 운송장[접착 라벨(1)]'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2, 3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 3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5의 구성요소는 '배달표지부 일측과 연결되고 운송장접착부 및 이형지와 분리된 뜯음시작부[소부분(14)]', '뜯음시작부 및 배달표지부가 이어지는 뜯음연결부[절단면(13) 상부의 수취확인증(12) 부분], 뜯음연결부 아래로, 뜯음시작부에 대해 운송장접착부 및 이형지가 분리된 틈인 완전절단뜯음분리부[절단면(13)], 뜯음연결부에 의해 배달표지부와 연결된 소정 너비를 이루는 뜯음시작부두께형성부[소부분(14)의 기재시트(2), 박리성층(5), 베리어층(3), 접착제층(4), 박리성시트(6)]를 포함한 뜯음시작부'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 구성요소 4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4와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5의 구성요소는 '전면으로 위치되어 배달표지부와 연결된 배달연결뜯음시작부[수취확인증(12)의 제3구역 부분], 배달연결뜯음시작부 배면에 위치되고 운송장접착부와 분리된 접착분리뜯음시작부[소부분(14)의 박리성층(5), 베리어층(3), 접착제층(4)], 접착분리뜯음시작부 배면

7)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5의 구성요소를 괄호 안에 기재하였고, 이하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에 위치되고 이형지와 분리된 이형분리뜯음시작부[소부분(14)의 박리성시트(6)]를 포함하는 뜯음시작두께형성부'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라) 구성요소 5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5와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5의 구성요소는 '운송내용표시부, 운송장접착부 및 이형지가 접착되어 운송장을 구비한 상태에서, 운송장 배면에서 소정 깊이로 커팅된 배면커팅방법에 의하여 운송장접착부 및 이형지와 분리되고[뒷면의 박리성시트(6)로부터 적어도 박리성층(5)에 도달하는 절단면(13)이 설치] 운송내용표시부와 연결되는 뜯음시작부'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마) 구성요소 6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6은 '전면의 배달표지부가 제거되는 부분으로 광고, 안내 및 경품안내 중 어느 하나의 정보가 표기된 광고경품안내부 및 광고경품안내부의 일측에 위치되어 배면커팅방법에 의하여 분리되는 접착분리뜯음시작부를 포함하는 운송장접합부'인데, 이는 선행발명 5의 '박리성층(5)과 베리어층(3) 사이에서 박리하도록 구성된 수취확인증(12) 부분'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양 구성은 운송장접합부[베리어층(3)]가 배면커팅방법에 의하여 분리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구성요소 6의 광고경품안내부는 배달표지부를 제거하면 광고, 안내 및 경품안내 중 어느 하나의 정보가 나타나도록 한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5는 위와 같은 구성을 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바) 구성요소 7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7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5의 구성요소는 '이형지[박리성시트(6)]는, 배면커팅방법에 의해 분리되는 이형분리뜯음시작부[소부

분(14)의 박리성시트(6)]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뜯음시작부를 구비한 운송장'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3) 차이점에 대한 검토

선행발명 6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6은 운송인이 수령인으로부터 운송인용 운송지(102)에 인수 확인을 받은 후 운송인용 운송지(102)를 부착용지의 평면(110a)에서 분리하면 부착용지의 평면(110a)에 인쇄되어 있는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3쪽 33줄 내지 36줄).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배달표지부'는 선행발명 6의 '운송인용 운송지'에 대응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차이점인 '배달표지부를 제거하면 광고 등 정보가 표기된 광고경품안내부'라는 구성은 선행발명 6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할 것이다.

선행발명 5와 6은 모두 운송업자 또는 배달업자가 화물에 붙여 사용하는 운송장에 관한 발명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운송인이 운송장을 붙인 물품을 목적지까지 배달한 후 수령인으로부터 인수 확인을 받은 수취확인증 부분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나 기술적 특징이 유사하거나 공통되며, '배달표지부를 제거하면 광고가 노출되는 구성'은 뜯음시작부를 형성하여 배달표지부가 운송장 및 운송물로부터 쉽게 분리되도록 하는 구성과 개별적·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선행발명 5의 수취확인증(12)을 제거하면 베리어층(3)이 노출되는 점에서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6을 결합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5의 다른 구성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도 없는 등 위 구성의 도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 위 각 구성을 결합하는 데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운송장 분야에서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5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선행발명 6에 개시된 '운송인용 운송지(102)를 부착용지의 평면(110a)에서 분리하면 부착용지의 평면(110a)에 인쇄되어 있는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결합하여 차이점을 극복하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6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검토 결과 정리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6을 결합한 것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소결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 6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승렬

 판사 구성진

판사 임경옥